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840
----------	------

제출년월일 : 2016.06. / .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
- 조문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까지 면제(안 제2조)
-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 12. 31까지는 재산세를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안 제3조)
- 지방세 관계법령(식품산업진흥법)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
- 감면기한이 종료된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산세 감면」 조문 삭제(안 제8조)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순위 신설(안 제9조제2항)
 -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 우선 공제
 -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 순위 공제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신설(안 제11조의2)
 -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적용

□ 개정조례안 : 불임 1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2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입법예고 : 2016. 4. 8. ~ 2016. 4. 28.(20일간)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 붙임4

방침결정문 : 붙임5

< 불임 1 >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 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제5조제2호 중 “농수산물가공품”을 “농산물가공품”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액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		세정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하순자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정담당 배순철
	담당자 성명·전화	김영란 (행정 2198)

< 복임 2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인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2015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p>	<p>제2조(시각장애인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p> <p>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 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p>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
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
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
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
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
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
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
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
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
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
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 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
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세를 면제한다.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생 략)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3의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1. (현행과 같음)

2. -----
----- 농산물가공품-----

3. (생 략)

제8조(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산세 감면) 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종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 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3.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란 고지서 1장당 1천원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신 설>

제11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액
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
세대상에 대한 세율전부를 감면하는 것
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
에는 법 제177조의2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
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
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